

決議文

國家再建과 民族中興으로 劃期的인 課業들이 推進되는 이때에 不振하였던 이땅의 圖書館界에도 圖書館法이 制定되었고 그 施行과 더부러 앞날의 發展에 曙光이 비치는 바 있습니다.

1964년 4月12日부터 18日까지 1週日間의 第1回 圖書館週間을 마치 하여 全國의 公共圖書館長이 韓國 公共圖書館史上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現下 우리의 公共圖書館이 겪고 있는 어려운 問題들을 討議하고 그 發展策을 協議하였습니다.

民主社會의 確立에 있어 國民個個人의 民主的인 思考와 素養의 涵養이 앞서야 함을 굳게 믿는 우리는 公共圖書館 奉仕의 올바른 理解를 促求하며 다음에 建議하는 몇가지 點으로 隘路가 莫甚하오니 이의 早速한 是正을 仰請하나이다.

1964年 4月 14日

全國公共圖書館長會議 代表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長 閔 泳 珪

建 議 事 項

1. 圖書館政策의 確立

現代國家에 있어서 公共圖書館이 차지하는 教育的 文化的 使命이 다른 어느分野 뜯지 않게 比重이 莫重함에 비추어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爲한 國家政策(計劃)을 文敎部에서 確立하고 이를 善 받침하기 爲하여 다음과같은 施策이 切實히 要請됩니다

(1) 文敎部 機構에 圖書館行政을 擔當하는 圖書館局 또는 圖書館課를 制編하여 주실것.

現實的으로 이것이 不可能하면 最少限度 圖書館係 또는 圖書館學을 履修한 專門職으로서 圖書館擔當 奬學官 또는 司書官을 配置하여 주실것.

(2) 市·道教育委員會에는 圖書館課 또는 圖書館係를 設置하고 不然이면 위에 摘記한 專門職을 配置하여 주실것.

(3) 市·郡敎育廳에는 위에 摘記한 專門職을 配置하여 주실것.

(4) 國民의 教育과 文化的 發展을 爲한 百年大計로서 市·道別로 道·市·郡立圖書館을 具體的인 年次計劃밀에 設置普及하여 주실것.

2. 公共圖書館의 財政(豫算)問題

圖書館 財政의 確保와 流通의 圓滑 如否는 圖書館事業의 盛衰를 左右합니다.

그러므로 財政은 建物, 資料, 人員과 함께 圖書館의 四大要素가 되고 있습니다.

圖書館 財政의 確立를 爲하여는 다음과 같이 施策이 切實히 要請됩니다.

(1) 圖書館 財源의 捕捉(포착)

가) 先進國의 例를 따라 圖書館稅制度를 採用하여 現行 地方稅法을 改正하여 消防稅와 같은 目的稅로서 圖書館稅를 規

定하여 주실것.

나) 地方稅法에 目的稅로서 規定되었던 從前의 教育稅 制度를 復活하되 初等教育의 經費로만 用途로 規制치 말고 圖書館 經費로도 使用할수 있도록 考慮하여 주실것.

다) 圖書館을 設置 經營하는 地方團體에 대하여 政府補助, 道費補助, 地方團體 負擔等의 比率을 定하여 圖書館의 育

※ 一般 및 教育費特別會計에 對한 圖書館費의 例

△서울특별市의 경우▽

年 度	總豫算總額	教特會計	市稅收入	圖書館費
62	5,062,667,040	1,297,092,040 0.1%	1,375,990,000 0.4%	5,697,350 0.4%
63	4,780,988,210	1,165,555,970 0.2%	1,303,045,680 0.8%	9,589,470 0.7%
64	5,431,171,710	1,283,671,400 0.15%	1,832,510,000 0.6%	7,797,090 0.4%

(4) 一般會計에서 教特會計로 圖書館費를 分期別로 轉出함에 있어서 轉出金의 摘期支出을 行하지 않는 弊端이 頻繁하여 圖書館運營의 委縮, 危機等 窮地陷入을 招來하는 事例가 多年間 許多하게 累積되어 왔으니 이를 文教, 內務의 兩長官命令으로 止揚하여 주실것.

3. 公共圖書館의 麼舍確保 問題

5·16以後 教育自治制 廢止에 따라 市·郡立圖書館에서 教育廳 麼舍를 圖書館 麼舍로 轉用하던 중 1963年末에 教育自治制가 復活되어 前廳舍로 復歸됨에 따라 圖書館은 麼舍 없이 右往左往하게 된 곳이 많습니다. 그 代表的인 例가 大邱市立圖書館의 境遇입니다.

文教部, 內務部, 地方自治團體等 關係

成을 畏하여 주실것.

(2) 圖書館 豫算 編成指針의 示達

每年 豫算編成때마다 示達되는 豫算編成指針書에 圖書館費에 對한 指針을樹立하여 주심으로써 任意制定에서 오는 豫算의 無軌道性을 止揚하여 주실것.

(3) 一般會計 및 教育費 特別會計의 各豫算總額에 對한 圖書館費의 比率이 늘면서 낮으니 그 比率을 높혀주실것.

부 部處長이 緊急히 協議하여 麼舍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公共圖書館의 所屬廳 問題

公共圖書館은 政府組織法, 文教部職制, 教育法上으로 보아 文教部의 管掌事項으로서 儼然히 明示되어 있으나 一群의 圖書館은 教育廳에, 一群의 圖書館은 市·郡에 所屬되어 있는 등 亂脈相을 露呈하고 있으나 教育廳으로의 移管을 踏踏하고 있는 市·郡에 對하여 文教, 內務, 兩長官의 命令으로서 早速히 移管토록 施措함으로써 二元化된 非合理的인 指揮監督體系에서 一元化된 指揮體系로 當然히 歸屬되도록 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公共圖書館의 職種 및 定員 問題

(1) 職種 問題

公共圖書館이 一群은 教育廳에 一群은 市·郡으로 分屬되어 있는 까닭에 前者는 國家公務員法에 依한 司書職種의 適用을 받는가 하면 後者는 地方公務員法에 依한 職種이 適用되고 있는 矛盾性을 들어내고 있아오니 後者의 移管을 早速히 實現하여 司書職種의 適用을 받을 수 있도록 一元化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定員問題

公共圖書館의 定員은 말이 안될만치 極히 적은 數字이고 大部分 臨時職員으로서 充當하여 이미 多年間에 이르고 있아오니 琉縫的인 臨時職制度를 止揚하고 正規의 定員으로 代置하여 주시는 同時に 人力不足으로 危機에서 헤덕하고 있아오니 定員의 增員問題를 深刻하게 呼訴하는 바입니다.

(3) 館長의 地位와 轉勤制의 採用

館長의 地位는 적어도 市立은 市의 課長及 郡立은 郡의 課長及으로 待遇하여 주시되 館長은 原則적으로 圖書館學을 履修한 專門職으로 補任할 것이며 國家公務員으로 任命하여 國公立圖書館相互間에 人事交流制度가 實現될수 있도록 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司書職의 別定職 待遇問題

圖書館의 業務가 高度의 專門性과 學術性을 띤 業務일뿐만 아니라 復雜多岐한

技術의인 特殊業務인 만큼 外國의 例와 같아 圖書館의 專門職인 司書職을 別定職으로서 待遇할 것을 建議하는 바입니다.

7. 時間外勤務手當의 支給

圖書館은 一種의 現業機關의 性格을 띠고 있어 開館時間이 最底 8時間에서 最高 17時間까지이며 平均 12時間의 開館을 하고 있는바 이에 從事하는 圖書館職員은 時間外勤務手當을 支給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閱覽料 徵收制度의 徹廢

오늘날 公共圖書館에서 利用者로부터 閱覽料를 받고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 밖에 없는 實情이오니 이 後進의in 羞恥를 拂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私立圖書館 設置의 勵獎

政府는 私立圖書館의 設置普及을 積極勵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公共圖書館 弘報活動의 支援

公報部는 公共圖書館의 弘報活動을 支援하기 爲하여 政府刊行物, 弘報用寫真, 映畫 필름等 資料를 圖書館에 直送 또는 貸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圖書館法施行令의 早速公布

政府는 目下 制定中에 있는 圖書館法施行令을 早速히 制定公布하여 주심으로써 圖書館이 前進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